

出願에서 出願公告까지의 制度上의 改善方案(2)



金徹洙
(辨理士)

出願補正制度

特許出願이 特許廳에 係屬되어 있는限 出願人은 一切의 書類에 關하여 補正을 할 수가 있다.

本欄에서는 實體에 關한 補正인 明細書 및 圖面의 補正의 制限에 對하여 重點的으로 論하기로 한다.

1. 補正의 時期的制限

特許出願人은 特許出願書에 最初에 添付한 明細書의 要旨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出願日(優先權主張 出願日일 경우에는 그 主張日)로부터 1年 3個月에 限하여 特許出願書에 添付한 明細書 및 圖面을 自進補正할 수 있다(特許法 第10條 2 ②項).

그 以外에도

가) 拒絕理由通知時(審查官 또는 審判官으로 부터)

나) 出願公告中 異議申請을 받았을 때(答辯書와 같이 補正書提出)

다)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請求時 請求日로 부터 30일내

라) 特許出願日로 부터 1年 3個月 經過한 後出願公告決定擧本의 送達前까지의 期間에 審查請求할 경우(既請求時에는 不可)

마) 出願人아닌 第3者로 부터의 出願審查請求가 있었다는 通知를 받은 날로 부터 3個月內에 限하여 自進補正을 할 수 있다.

出願補正是 이와 같이 自進補正에 時期的制限을 받고 있는데, 出願人の 立場으로 본다면 實際에 있어 出願日로 부터 1年 3個月의 自進補正期間이 經過한 후 拒絕理由通知書를 받을 때 外에는 自進補正의 機會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出願人으로서는 당연히 이 機會를 잘 利用하여 注意怠慢에 의한 모처럼의 機會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많아져 가는 公知慣用技術, 公知特許技術, 外國의 技術, 秘密下에 있는 先出願發明等을 檢索하고 對比해 보아야만 이를 技術과 抵觸及 公知部分을 把握하여 特徵部分만을 추릴 수 있고, 따라서 特許請求範圍를 中心으로 하여 明細書를 거의 完全에 가깝게 補正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出願人으로서는 實事上不可能한 일이며 審查官의 審查 또한 至難한 일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특히 先進外國의 잘 정비된 特許明細書 内容과 달리 時間, 資料, 經費등 모든 面에서 劣勢하며 특히 水準 또한 뒤지는 우리의 現實을 감안한다면 現行出願補正制度는 舊法과 달라서 出願人에게는 가혹한 面마저 엿보인다. 더욱이 多項制 클레임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現行 特許法制는 갈수록 出願補正의 어려움을 激增시킬 것임이 分明하다. 그렇다고

1年 6個月後 公開라는 出願公開制度를 둔 以上 公開와의 關係에서도 1年 3個月이라는 自進補正期間을 무턱대고 延長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우기 自進補正을 可能하도록 하는 拒絕理由通知도 審查負擔 및 審查期間短縮 등의 理由로 因해 2回以上 出願人에게 通知함이 어려운 것이 現實임을 감안해 볼 때, 微細部分에 까지 公知의 技術, 特許技術과의 重複을 이리저리 피해야 하는 出願人에게는 出願補正이야말로 심히 負擔큰 일인 아닐 수 없다.

또한 審查官으로부터 拒絕通知를 받는 出願人の 多數가 意慾을喪失하게 될을 볼 때마다, 또한 特許法 1條의 特許制度의 目的인 發明獎勵·育成이란 點에서 보더라도 現行 出願補正機會의 制限이야말로 再檢討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日本·美國등의 先進國과 달리 特許制度가 아직도 뿌리를 멀내리고 國民들의 發明意識이 生活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現實을 감안한다면, 나아가서 *技術發展을 통해 短時間內에 工業先進國으로 浮上하기 위해서라도 現行出願補正制度는 어떠한 形態로든 改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出願補正의 時期의 制限은 어떠한 方案으로 改善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 出願日로 부터 出願公告後 檢定까지의 期間을 ① 出願日로 부터 1년 3個月까지의 自進補正期間 ② 이 自進補正期間經通後 出願公開까지의 期間 ③ 出願公開 前後로 부터 拒絕理由通知前까지의 期間 ④ 拒絕理由通知後 出願公告決定謄本送達前까지의 期間 ⑤ 出願公告後의 時期로 便宜上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물론 出願公開前에 拒絕이나 出願公告도 있고 拒絕理由通知없는 出願公告도 있다).

위에 예거한 時期中 出願補正이 可能한 時期는 ①, ③, ④項의 時期일 것이고 ⑤項의 경우에는 自由로운 补正是 不可하고 소위 訂正 또는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不明瞭한 部分의 釋明 정도가 可能할 뿐이니 實質의in 出願補正是 終국 ①, ③, ④項의 時期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審查官의 拒絕理由通知後 부터의 出願補正이 가장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出願人의 檢索結果, 意見 및 主張과 審查官의 先行技術調查結果, 意見이 만나서 相衝되는 時點이고 여기에서 再檢討·調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 通程에서 真正한 가치를 가진 出願補正이 이루어지고 公告를 向한 가장 중요한 段階로서의 补正是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審查實務上, 拒絕理由通知가 2回를 超過하기 어려운 것이 現實情이다. 審查官은 最初 拒絕後 또다른 새로운 證據가 發見되었을 때 新規性이나 進歩性의喪失등을 理由로 한 第2次拒絶理由通知를 出願人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出願人은 第1·2次 拒絕에 對한 反對證據와 反對意見을 開陳함에 全力を 投球하다 보면 請求範圍의 微細한 部分 및 이에 따른 發明의 詳細한 說明 및 圖面에 까지 이에 맞추어 한 补正是 未備될 수도 있고, 審查官의 指摘대로 하더라도 明細書의 补正是 完全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第2次 拒絕後에도 加벼운 정도의 补正是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訂正程度의 补正是으로 明細書의 흠결이 治愈될 수 있는 것인데, 現行法에 의하면, 第3次拒絶理由가 뒤따르지 않는限, 그 出願은 补正, 訂正할 機會조차 없게 되므로 설령 出願人の 아이디어가 좋고 特許性이 있어 加벼운 补正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라도 아깝게 살리지 못해 拒絶査定에 이르거나 아니면 意慾을喪失한 出願인이 抛棄에 이르게 되는 事例가 적지않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또한 补正으로 治愈될 수 있는 것을 拒絶査定 받게 되면 이에 不服하는 出願人は不服抗告審判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審查期間의 長期化라는 문제發生도 전혀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現行法上 补正의 時期制限規定을 緩和하여 出願公告 決定의 謄本送達前까지는 自進補正機會를 놓친 出願人에게 特許法 第63條에서 규정하는 바의 訂正정도라도 許容해야 할 것이라思慮되며, 可能性있는 出願, 그 나름대로 特徵이 있어 特許性이 있는 出願이라면 拒絶理由通

知를 3회以上 하다못해 5회까지라도 出願補正에 의하여 救濟하는 方向으로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審查官으로서는 차치 誤解를 받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審查官의 自由心證主義에 의한 審查의 獨立性이 法定되어 있는 以上 現在의 우리 나라의 實情을 감안해서라도 出願人의 利益과 發明의 奬勵란 次元에서도 出願補正의 時期的制限은 緩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补正의 内容的 制限

明細書 또는 圖面이 补正되면, 그 出願은 出願日로부터 补正된 出願으로 看做된다. 그러나 要旨變更, 즉 그 出願의 补正結果,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技術的事項 범위(카테고리)가 實質적으로 變更되는 경우에는 그 补正出願이 後에 特許되었을 때 權利의 變動을 招來할 것이므로 認定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特許法의 경우 出願公告決定臘本送達時點을 기준으로 그 以前의 경우에는 要旨變更 없는 範圍內에서 特許請求範圍의 自由로운增加, 減縮, 變更을 許容하고 있다(特許法 10條 3).

그런데 문제는 本論에 들어가서 어디까지가 要旨變更인가 하는 判断에 있고, 또한 이러한 判断이 있은 後의 出願인이 取할 수 있는 法的節次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化學分野의 特許出願에 있어 實施例의 追加는 要旨變更에 屬하는 것인지 아닌지 機·電分野의 特許出願에 있어서 特徵部分에 대한 詳細圖面 또는 回路圖의 追加는 要旨變更에 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判断(물론 케이스一바이一케이스이겠으나), 그리고 要旨變更이라고 判断되어 審查官이 特許法施行規則 第16條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要旨變更이라 하여 出願人에게 이를 通知하고 意見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아랑곳없이 만일 拒絕査定을 했을 때 出願인이 取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당장 出願人에게는 現實로 나타나는 問題다.

要旨變更이라 하여 拒絕理由通知를 追加로 띠우지 않고 拒絕査定하였을 때에는 出願人으로서는 抛棄하지 않는 限, 出願取下나 拒絕不服抗告審判의 둘 중 한가지 方法을 擇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出願을 取下하고 补正된 内容으로 새로이 出願하는 경우에는 當初의 出願時點과 새로이 出願하는 時點의 사이가 空白이 되어 이 空白期間中同一技術內容으로 된 他人의 出願이 있을 경우 별 수 없이 그 새로운 出願은 拒絕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先願權確保를 위한 拒絕不服抗告審判請求가 피치 못하게 되는데, 日本의 경우에는 要旨變更한 补正된 發明에 대해 새로운 出願을 하면 그 出願은 절차 补正書를 提出한 때에 한 것으로 보므로(日本特許法 第53條 4項), 要旨變更이 一切 認定되지 않으므로써 救濟對策이 없는 것에 比해 出願人에게 대단히 有利하게 되어 있다. 물론 出願日의 邊及은 認定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要旨變更되어 登錄된 特許에 對해서는 特許法第40條 规定에 의하여 同一內容의 他人의 後出願이 그 补正前에 있을 경우에는 先願主義規定에 의하여 特許無效事由를 構成한다(日本特許法第123條).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錯誤에 의하여 要旨變更된 出願發明이 特許되었을 경우 特許無效審判(全部 또는 部分)을請求할 수는 되며 日本과 같이 先願主義規定에 違背됨을 理由로 할 수 없고 단지 特許法 第6條에서 규정하는 新規性·進歩性의喪失을 理由로 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出願補正時期 및 内容制限의 緩和는 特許廳의 業務의 過重과 말할 수 없는 煩雜·混亂을 가져오고 第3者에게도 被害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나라의 技術水準과 出願人の 意慾, 그리고 表現ability, 時間的·經濟的事情等 諸般與件을 감안해 볼 때 出願補正制度가 日本등의 先進工業國과 같은 정도로 엄격할 수 없음은 必然의인 것이라 보며 過渡期으로나마 緩和해야 한다는 것이 筆者の 私見이다.

出願變更・出願分割制度

現行 特許法 第10條 및 第14條는 각각 出願分割과 出願變更에 關해 규정하고 出願分割 및 出願變更可能時期는, 出願分割의 경우 補正可能期間內에 限해, 出願變更의 경우에는 出願日로 부터 最初의 拒絕查定檔本을 받은 날로 起算하여 30日前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행해지고 있는 出願分割의 時期는 一發明이 아닌 多發明을 理由로 拒絕豫告를 받은 때이고 出願補正의 경우에는 拒絕查定을 받은 후 高度의 水準을 가진 發明으로 認定할 수 없다는가 進歩性喪失을 理由로 할 때가 大部分이다.

出願分割 및 出願變更制度에 있어 最大의 利點은 出願日의 遷及이다. 그런데 舊法에서는 出願日의 遷及效果으로 充分하였는데, 現行法으로 改正되어 審查請求制度가 생기면서 이 出願日의 遷及效果으로는 滿足하지 못하게 되었다. 換言하면, 審查請求制度란 審查請求한 때로 부터 비로소 審查가 進行되는 것으로, 分割出願은 새로운 出願이 追加되는 것이니 權利獲得을 위해서는 當然히 審查請求해야 審查가 進行되고 出願變更된 出願은 原出願이 取下되는 것으로 看做되므로 審查請求도 아울러 取下되는 것으로 되어 새로이 한 變更出願에 關해 審查請求를 따로 하여야만 審查가 進行되도록 解釋되고 있다. 그러나 審查請求順으로 審查를 하게 되어 있는 規定때문에 결국 分割된 새로운 出願이나 變更된 出願은 分割出願 또는 變更出願時부터 다시 審查가始作되는 것으로 解釋되므로써 實事上 審查期間이 그때까지의 審查期間과 새로운 審查期間과 합쳐 增加된다는 矛盾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矛盾을 없애기 위해 特許廳은 1985年 2月 9日字로 指針을 마련하여 이 날以後에 한 出願에 대해서는 審查請求를 한 出願에 限하여 審查期間이 길어지지 않도록 原出願이 審查請求된 것으로 보므로써 早速한 時日内에 審查

를 끝내는 것으로 하였다 한다.

적절타당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2月 9日前에 分割 또는 變更한 出願에 대해서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함에 따라 審查期間上의 惠澤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써 오히려 2月 9日 前에 한 分割 또는 變更出願은 그後에 한 分割出願이나 變更出願보다 훨씬 늦게 審查가 完了된다고 하는 앞뒤가 바뀌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는 法制未備로 일어나는 문제이고 日本特許法에서도 마찬가지(日特第48條 2, 3, 4, 5 및 特施規 31條 2)이나 日本에서는 이 경우 繼續審查되어온 것으로 하여 審查期間이 別途로 追加되어 길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편 出願分割에 있어서 併合出願을 認定하지 않는 우리 特許法では 出願分割時에 해야 할 原出願의 出願補正을 고려하여 特許法 第10條 2項에서 出願分割은 어디까지나 出願補正이 可能한期間內에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出願公告後 異議申請을 받아 答辯할 때에도 可能하다는 뜻이 되고, 따라서 出願公告를 因한 假保護權의 發生 등으로 第3者와의 利害關係가 결린 時期에도 出願分割이 可能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出願公告後의 分割出願이 特許法 第10條 2(出願補正) ③項 但書의 規定에 違背되는 것이고, 그 分割出願은 最初出願時에 있어서 한것으로 看做되어 그 效果가 遷及하기 때문에 第3者에게 不測의 不利益을 가져올 염려가 있게 되어 이는 適切치 못하다 생각된다.

또한 적절한 出願補正이 不可한 時期, 이를테면 拒絕豫告에 대한 答辯期間經過後에 出願分割을 認定하더라도 現行 出願補正制度의 時期制限으로 补正이 實事上 不可能하여 出願分割도 따라서 不可能하게 된다.

이것을 救濟하자면 審查官이 다시 拒絕理由通知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만일 審查官이 單一發明이 아닌 것으로 拒絕하지 않고 다른 理由로 拒絕했다가 答辯書提出期間經過後 複數發明임을 發見했을 때 이를 理由로 하여再次 拒絕한다면 出願分割을 할 수 있는 機機會 認定되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곧바로 拒絕查定한다면 出願分割의

機會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를 救濟 할 수 있는 길은 現行 特許法 第82條 규정에 새로운 拒絕理由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再次 拒絕理由通知를 발부하도록 하는 規定을 插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審查官도 多發明임을 發見치 못하여 出願公告된 出願이 異議申請에 의하여 多發明임이 確認되었을 때를 對備하여 異議申請答辯期間內에 出願分割을 하도록 하면 訂正의 정도(特許法 第10條 2의 ③項但書 및 特許法 第63條) 밖에 認定되지 않는 규정에 反하게 되어 一見矛盾이라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出願人을 救濟할 길이 없으므로 出願公告後의 出願分割에 대해서는 特則을 設定하여 要旨變更 없는 범위 내에서의 自由로운 補正是 물론 어렵더라도 出願書에 最初에 첨부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事項의 범위내에서 特許請求範圍의 增加 또는 擴張이 없는範圍내에서의 補正是 認定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第3者(一般公衆)에 대한 不測의被害는 最少化될 것인가 때문이다.

結 論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이 日本의 特許法制와 類似한 우리의 特許法制는 아직도 改正後時日이 日淺하고 舊法에 比하여 달라진 部分이 너무나도 많은데다가 우리의 現實이 이에 適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難題들이 쌓여 있어 完全을 期하기에는 어렵겠으나 특히 優先審查制度, 出願補正制度, 拒絕豫告制度의 適切한 活用에 重點을 두고 法制의 整備와 運營上의 妙를 살릴수 있다면 出願人에게는 보다 活性化를 불어 넣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發明의 生活化에의 接近과 親密感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期待된다.

다만 審查負擔의 過重과 審查官의 數 또한 絶對不足한 것이 우리의 現實이므로 特許廳이 계속 推進하고 있는 電算化等의 現代化作業이 早速히 이루어지기를 期待하면서 그때까지 주어진 與件下에서 最善의 길을 模索하여, 出願人(및 代理人)도 보다 분발과 協調를 통해 다 같이 努力하여야 할 것으로 믿으면서 이것으로 끝을 맺는 바이다. ♦

(案) 月刊「發明特許」原稿募集 (内)

本誌는 讀者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 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바랍니다.

- ◎ 論 文 : 200字 原稿紙 20~50枚 (번역문포함)
- ◎ 우리社의 特許管理 : 30枚 내외
-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 30枚 내외 (추후 단행본으로도 製作됨)
- ◎ 나의 提言 : 10枚 내외 (工業所有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 工業所有權 수필 : 10枚 내외 (外國觀察記포함)
- ◎ 기타(社내消息 · 新製品 紹介 · 만화등)
- ◎ 接受期限 : 수시 접수
-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査部 「月刊發明特許」 編輯室